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의안 번호	189
----------	------------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우수한 기업 및 민간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규정
- 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속초시 산업구조 고도화와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속초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안 제4조 내지 제9조)

- 기업 및 투자유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속초시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유치와 관련된 중요시책 및 지원, 투자유치성과금 지급심의 등을 수행토록 함

나. 산업시설용지 지원 (안 제10조)

-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본사이전보조금 지원 (안 제11조)

- 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장이전보조금 지원 (안 제12조)

- 이전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의 3억원 초과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소이전보조금 지원 (안 제13조)

- 이전기업의 연구소 이전에 따른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부지매입보조금 지원 (안 제14조)

- 이전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고용촉진보조금 지원 (안 제15조)

- 이전기업이 속초시 거주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안 제16조)

- 이전기업이 속초시 거주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안 제17조)

-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또는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의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 고용인원 규모 및 투자금액에 따라 최고 50억원까지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안 제18조)

-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세제감면 (안 제19조)

- 이전기업에 대해 해당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타.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안 제23조)

-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역 등으로 임명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파. 성과금 지급 (안 제24조)

-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기업·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10쪽
- 2) 기술개발촉진법 : 10쪽
- 3) 소득세법 시행령 : 12쪽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12쪽
-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 12쪽

나. 예산조치 : 2008당초예산 계상 계획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07. 5. 9. ~ 5.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기업 및 민간투자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라 함은 강원도의 지역에서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써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 공장 또는 연구소를 속초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인원을 말한다.

제3조(기업 및 투자유치 의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제4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선정을 위하여 속초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관련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활동 전개
3.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기업 및 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심의
6.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5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원 1인
 2. 시의원 1인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업무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4년제 대학교수
 6.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위촉하는 자
-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속초발전추진단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회의결과 조치)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투자유치 지원

제10조(산업시설용지 지원)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본사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본사건물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본사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장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 3억원 초과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공장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소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의 연구소이전에 따른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연구소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용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이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고용촉진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이 속초시에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 이하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이 속초시에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 이하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중·대규모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
2.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4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②타 시·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속초시로 이전 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지원 범위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세제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는 해당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제22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 ①시장은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와 속초시의 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속초발전자문역(이하 “자문역”이라 한다.) 등으로 임명하여 자본유치를 위한 민간전문가로서 활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제·문화·학술계통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역에 임명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수수료, 수당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성과금 지급)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기업·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적용범위) 보조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발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4.2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받은 전문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1.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2. 우수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채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